천·년·의·비·상
전라북도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도 보

제2870호 2022. 11. 11.(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14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5147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3
○ 전라북도 조례 제5148호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 전라북도 조례 제5149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전라북도 조례 제5150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전라북도 조례 제5151호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전라북도 조례 제5152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전라북도 조례 제5153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전라북도 조례 제5154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전라북도 조례 제5155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전라북도 조례 제5156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20
○ 전라북도 조례 제5157호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 22
○ 전라북도 조례 제5158호 전라북도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전라북도 조례 제5159호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4
○ 전라북도 조례 제5160호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전라북도 조례 제5161호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27
○ 전라북도 조례 제5162호 전라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 29
○ 전라북도 조례 제5163호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전라북도 조례 제5164호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전라북도 조례 제5165호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33
○ 전라북도 조례 제5166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전라북도 조례 제5167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전라북도 조례 제5168호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 43
○ 전라북도 조례 제5169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47
○ 전라북도 조례 제5170호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9
○ 전라북도 조례 제5171호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1
○ 전라북도 조례 제5172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 전라북도 조례 제5173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7호 중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 59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80호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6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81호 공사중단 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계획 변경(시행자) 고시 64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60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아이꽃밭) ····· 65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74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 66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11. 4.(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67

시 군

○ 전주시 공고 제2022-2567호 도시계획시설(평화2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69
○ 전주시 공고 제2022-2569호 도시계획시설(한두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77
○ 군산시 고시 제2022-1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외2개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86
○ 군산시 고시 제2022-19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미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91
○ 군산시 고시 제2022-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외1)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93
○ 군산시 공고 제2022-2265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새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96
○ 익산시 고시 제2022-184호 여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지형도면고시 ····· 101
○ 익산시 공고 제2022-30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10호외2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103
○ 익산시 공고 제2022-30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외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105
○ 익산시 공고 제2022-306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108
○ 익산시 공고 제2022-3069호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110
○ 남원시 고시 제2022-152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2
○ 김제시 고시 제2022-1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114
○ 완주군 공고 제2022-1608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121
○ 완주군 공고 제2022-1609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 122

기 타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고 ····· 126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 127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5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 128
○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2-1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 129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2. 10.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4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위촉) ①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47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공헌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공헌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48호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도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2.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및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
3.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전달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임기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소속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

다.

제7조(회의)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각 자문단은 정책자문과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단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49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959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0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위임사무에”를 “위임사무와 도내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1호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전라북도공무원”이란 아래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등”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의 제목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교육훈련계획의 수립)”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에”를 “도지사는 전라북도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의회의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

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을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시장·군수가”를 “도의회의장등이”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장등이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필요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을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의회의장등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의 교육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6조 관련)

구분 \ 기준	반 납 액
1. 제6조제1호·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6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frac{1}{2}$
3. 제6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2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제7조”를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의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의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5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영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를 “영제30조”로,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를 “제35조”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가”를 “도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업·채석”을 “채석”으로, “채광물 가격과”를 “채취료와”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 채취료”를 “채취료”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아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나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3)”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을 “토지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95조”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제95조에”를 “별표에”로, “영제95조상”을 “별표”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3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납세풍토”를 “납세문화”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감면

② 제1항제9호의 우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별표 1]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제5조 관련)

시설명	감면 내용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법인은 동반 3인까지)
전라북도립미술관	관람료 면제(법인은 동반 3인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입장료 면제(법인은 동반 3인까지)

■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증 서식(제5조 관련)

(앞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증

○ 번호 : 0000 - 0000호
○ 성명(법인 및 대표자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전라북도지사 인

(규격 : 85㎜ × 54㎜)

(뒷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규격 : 85㎜ × 54㎜)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4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제4항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를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및 시·군 연합회장”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를 “하며,”로,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위하여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25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도 연합회장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 중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회장 등의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

하여 새로운 회장 등을 임명하거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등은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회장 등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1. 대장: 12월 1일 이전
2. 시·군 연합회장: 12월 15일 이전
3. 도 연합회장: 12월 30일 이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회장 등의 임기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회장 등을 임명하거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회장 등의 임기는 제25조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5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녀장학금”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그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대원”을 “대원 및 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모범대원”을 “모범대원 및 모범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원”을 “대원 및 대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녀”를 “자녀(유자녀 포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6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라북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라북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라북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7호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전라북도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이 해당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루·요루 장애인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2. 장루·요루 세척 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지원사업
3. 장루·요루 장애와 해당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8호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이외에 시행령”을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시행령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준용 등)”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59호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을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0호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외 하고는”을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치매관리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를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로 하며, 제2항 중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학·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조례 제9조제3항”을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1호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유형별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2호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1인가구의 건강관리 사업
4. 1인가구의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5.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가 지역 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3호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 제16조 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7. 6.25 참전국 교류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4호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를 “(건축물 석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예외 규정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시설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회복지시설 석면조사 및 지원)”을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조사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를 “필요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로, “사회복지시설”을 “건강취약계층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건강취약계층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5호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시·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6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을 “제1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와 제62조의16의 규정”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설립한자”를 “설립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에 따라”를 “따라”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제6호의 규정”을 “제2조제6호”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6조, 제9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3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4. 시장정비사업자
5. 체인사업자(직영점·가맹점)
6.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창업기획자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 농식품투자조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와”를 “전라북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을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을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한다.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기금운영상”을 “기금의 운용상”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으로,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쟁력강화”를 “경쟁력 강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특화산업지원”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안정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의한 사업별”을 “제3항 각 호의”로 한다.

④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투자 지원자금
2. 그 밖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자금

제8조(종전의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대출자금”을 “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금관리”를 “기금의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의하며, 위탁에 관해”를 “따르며, 위탁에 관하여”로 한다.

⑥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이차보전”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창업 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투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사업의 지원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중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계정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제3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설립사업”을 “설립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로, “시설현대화”를 “시설 현대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로, “표준화 및 현대화,”를 “표준화, 현대화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를 “융자계정 중 지역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라”로, “이를 사용”을 “사용”으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경영안정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사업을 위하여 이를”을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제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송업체”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사업을 위하여 이를”을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밖의”를 “밖에 도지사가”로, “위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6항 중 “기금 중 창업·벤처”를 “투자계정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4항,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상기업 등에게”를 “선정 기업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까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기관”을 “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으로,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⑦ 투자계정 중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 자금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0조의2) 중 “시행”을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 등)”을 “(융자 지원계획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금별 지원에 관하여 매년”으로, “융자계획”을 “융자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기금”을 “제8조제3항”으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를 “위탁하는 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을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5항 본문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번”을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5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기금을”을 “자금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의”를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전문기관의 협조)”를 “(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을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으로, “현지실사”를 “현지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7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내”를 “도내”로,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을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7조 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7조 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지방중소기업”을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제3항제1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제21조 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8호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이하 “멀티플렉스”라 한다)는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0-19에 둔다.

제3조(구성) 멀티플렉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과학관
2. 메타라이프관
3. 가상세계홀
4. 입주기업실, 운영사무실, 휴게실, 기계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역할과 기능) 멀티플렉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융합기술을 이루는 영역별 요소의 과학원리 체험
2. 가상융합기술과 연계한 미래의 가상융합 생활 체험
3. 기술·예술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가상세계 체험
4. 기업지원을 통한 가상융합기술 산업 육성
5. 그 밖에 멀티플렉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제5조(이용시간) ① 멀티플렉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31일):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멀티플렉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멀티플렉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명절(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보수 및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7조(이용료) 멀티플렉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② 도지사는 만 3세 미만자, 65세 이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은 무료로 하고, 부안군 거주자는 30퍼센트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전북투어패스 사용자”에 대하여 50퍼센트 할인한다.

제9조(이용료의 환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입장권을 구매하고 이용개시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멀티플렉스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제10조(입장 및 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멀티플렉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위탁) ① 멀티플렉스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멀티플렉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멀티플렉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멀티플렉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멀티플렉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품목	기술과학관	메타라이프관	가상세계홀	3개 시설 이용권
개 인	4,000	4,000	2,000	8,000
단 체 (20인 이상)	3,000	3,000	1,500	6,000
부안군민 (30% 할인)	2,800	2,800	1,400	5,600
전북 투어패스 사용자	2,000	2,000	1,000	4,000

※ 할인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함.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69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0호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조사·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비용의 지원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피해조사)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피해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2. 올바른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1호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 및 대응체계
2. 제1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유통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

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2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를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서문화 진흥을”을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를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며, 제6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제6조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와 경영안정을”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때에는 회의를”을 “때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3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20조제4항 중 “제정(1962.1.20.) 이전”을 “제정 이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마목 중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를 말한다.

제26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8조의2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0조(감독 등)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는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안 제6조제1호 관련)

① 평가항목 :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배점 : 20점)

- 최근 3년간 전라북도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 평가건수(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 평가금액(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② 평가항목 : 감정평가사 수(배점 : 15점)

○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수 평가기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전라북도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

○ 평가배점(15%) - 전라북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구 분	20명 초과	16~20명	11~15명	6~10명	5명 이하
평 점	15	14	13	12	11

③ 평가항목 : 기존 평가참여 규모(배점 : 30점)

-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가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종전, 종후) 평가금액 및 횟수(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 참여 평가총액(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 기 참여 평가횟수(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④ 평가항목 : 행정처분 횟수(배점 : 1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전라북도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
-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없음	3회 이하	4~6회	7~9회	10회 이상
평 점	15	12	9	6	3

⑤ 평가항목 :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배점 : 10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업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

구분	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금액	감정평가업자가 제안한 수수료(금액)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초과 ~ 100%미만)	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금액) (100%~120%)
평점	10점	평가점수 =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제안금액)/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50	0점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7호

중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중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11일

1. 사 업 명 : 중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익산시 정족동, 낭산면, 춘포면, 삼기면, 오산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396.4ha
5. 사업개요
   ○ 수 원 공
      - 저수지 1개소, 양수장 4개소, 제수문 1개소, 교량 1개소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기간 : 2022. 11. ~ 2025. 12.
7. 총사업비 : 7,183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전화063-860-007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오산면 영만리	1000-70	구	19,091	8	국(농림수산부)					
2	오산면 영만리	706-16	답	106	110	이정진	장신리 504-6				
3	오산면 영만리	706-4	답	541	7	이정진	장신리 504-6				
4	오산면 영만리	706-13	답	60	22	국(건설부)					
5	오산면 남전리	1876	답	2,452	255	한동웅	익산시 오산면 송내길 103				
6	오산면 남전리	30-29	구	21,937	1,526	한국농어촌공사					
7	오산면 남전리	950-9	구	11,202	1,584	국(농수산부)					
8	오산면 남전리	938-47	구	90	41	한국농어촌공사					
9	오산면 남전리	938-26	도	198	3	국(농수산부)					
10	오산면 남전리	938-19	답	2,031	19	김문구	익산시 오산면 신교길 23				
11	오산면 남전리	1936	구	22	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고시 제2022-280호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11일

1. 사 업 명 :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성수면 도통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85ha
5. 사업개요 : 저수지 2개소
   - 반월저수지 : 제당 외제 덧쌓기 및 내제 사석보강, 그라우팅 사통 재설치 및 복통 보수보강
   - 중평저수지 : 여방수로 재설치, 내제 사석보강
6. 사업기간 : 2022. 10 ~ 2025. 12.
7. 총사업비 : 5,764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063-350-7051)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760-1	유	24,549.0	2,92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980-1	유	38,640.0	1,18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006	유	5,977.0	2,89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017-12	임	4,175.0	283.4	국	기획재정부				
5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017-15	도	86.0	29.5	국	진안군				
6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262-14	천	7,844.0	1,068.4	국	건설교통부				
7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560	답	5,628.1	499.8	문창언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660				
8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563	천	3,762.9	8.6	국	건설교통부				
9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575	도	1,278.0	27.6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576	구	1,290.4	1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577	구	72.1	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산162-2	유	1,983.0	1,24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21	유	7,752.0	3,498.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46	유	7,900.0	1,30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2	유	1,273.0	82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2-2	유	149.0	149	이창일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347				
17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2-4	도	360.0	42.7	국	진안군				
18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3-1	유	1,607.0	50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3-2	도	20.0	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5-2	유	747.0	747.0	원순복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6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21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5-3	유	499.0	499.0	전병관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64				
22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5-6	유	26	26.0	전병관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64				
23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6	유	307.0	307.0	전승현	서울 마포구 중동391 계룡아파트 101-103				
24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1048-28	천	41,951.0	473.7	국	건설부				
25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1049	도	1,742.0	158.2	국	국토해양부				
26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1052	도	417.0	71.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7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1053	도	36.0	27.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8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30-7	도	1,370.0	8.9	국	진안군				
29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36-4	임	298.0	298.0	이찬규	전주시 효자동1가 205-74 주공아파트 1동 503호				
30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36-5	도	1,785.0	202.8	국	국토해양부				
31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991	전	859.0	859.0	이재택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8-2 (팔복동1가)				
32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7-1	전	317.0	317.0	전판기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59				
33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5-1	유	955.0	955.0	전병관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64				
34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5-4	유	324.0	324.0	원환갑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0				
35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27	유	1,055.0	1,055.0	김영철	경성부통의동 70				
36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29-1	유	1,974.0	1,974.0	이귀동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29				
37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986-7	전	16.0	16.0	한순희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64				
38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5-8	유	20.0	20.0	원환갑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70				
39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1048-70	잡	115.0	115.0	전옥기	진안군 성수면 중음길 177-36				

전라북도 고시 제2022-281호

공사중단 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계획 변경(시행자)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2-6호로 선도사업계획 정정 고시한 공사중단 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정비 선도사업계획을 변경(시행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 업 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
2.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3년 12월
3. 시행자의 명칭(변경)
   - 당초 : 전라북도지사
   - 변경 : 무주군수
4. 기본방향 및 목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노인 복지공간 등 생활SOC 공급
5. 정비방법 및 내용
   ○ 정비방법 결정 조서

위 치	중단 시점	정비 방법	정비 후 용도	사업 기간	목표 연도	사업비 (억원)	비고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68, 569	'99.12	취득후 리모델링 (위탁)	주민공동 이용시설 (생활SOC시설)	'21.12~ '23.12	'23	106.8	

6.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주택건축과(☎063-280-3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60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사단법인 아이꽃밭)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2년 11월 11일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2022-40호
2. 허가일자 : 2022. 11. 04.
3.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이꽃밭 (대표자 이상빈)
4. 사무소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정2길 22-7, 1층
5. 주요사업
   - ㅇ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4호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사업
   - ㅇ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ㅇ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74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민법」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따른 신규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2년 11월 11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신림애향회
2. 대표자 : 안재영(1964. 9. 4.)
3. 주된 사무소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대강길 3
4. 주된 사업
   - ○ 지역사회 주요행사 주관
   - ○ 지역사회 봉사활동
   - ○ 장사시설 위탁운영 및 관리사업
   - ○ 기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허가연월일 : 2022. 11. 4.
6. 허가구분 : 신규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2. 11. 4.(금) 09: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29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이번 주말(11.5.~6.) 고창·정읍 등 도내 유명 관광지의 단풍이 절정을 맞아 많은 등산·관광객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므로 경찰,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적소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 등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바람. ○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 도민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관 :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 협조 : 소방본부, 전 실·국)
2022 -30	경제동향 자료 등록·활용을 위한 누리집 정비	○ 우리 도 누리집에 게시된 전북경제동향은 관리 미비 및 시인성 저하로 정비가 필요하므로 타 시·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도민이 경제동향 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정비하기 바람. - 특히, 물가동향, 취업률, 실업률 등에 대한 전국 대비 변동 추이 등 핵심 경제동향 지표·자료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광주) 물가동향 주간단위 분석·작성, (대구) 산업동향 분기별 작성 (주관 : 일자리민생경제과 / 협조 : 소통기획과)
	당면·현안업무	○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 - 현장행정은 반드시 실·국장이 직접 방문하고, 현장행정 계획(일정)을 지역구 도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필요시(의원 일정 고려) 동행하여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관 : 자치행정과 / 협조 : 전 실·국)
	당면·현안업무	○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 11월은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상임위 심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국회 상주하는 국가예산팀을 중심으로 상임위 심사에 대응하여 각 사업별로 정책질의 의원을 매칭하고 실제 질의가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바람. (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전 실·국) ○ **대규모 사업 유치 후 추진상황 수시점검 당부** **- 에디슨모터스 회장 구속 기소...'군산형 일자리 악영향'(10.25. 전주KBS)** **-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대상 탈락...사업추진 먹구름 끼나(11.1. 전민일보)** **- '노을대교 건설 2030년 완공 사실상 힘들다'(11.2. 전북도민일보)** - 각종 대규모 사업 유치 후, 일부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업 추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국에서는 사업 유치 후 후속조치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부처 등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특히, '하이퍼 튜브 종합시험센터사업 예타 대상 탈락' 관련 기사로 인해 도민들이 사업 취소 등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대변인과 협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및 대책을 언론에 상세히 설명하고 소통하기 바람. (주관 : 전 실·국 / 협조 : 대변인)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현안 법안 통과 대응 노력**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행정안전위원회)**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보건복지위원회)**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관련 '새만금사업법'(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우리 도의 주요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논리 보강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병행하되 소관 위원회 의원에 대한 중복 방문 등을 피하고, 활동 체계를 일원화(시·군과 공동 대응시 협의)하여 설명활동을 추진하기 바람. (주관 : 관련 실·국 / 협조 :) ○ **'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방역 등 철저** -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역 및 수능 당일 이동대책 등 우리 도에서 지원할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주관 : 교육협력추진단 / 협조 : 사회재난과) ○ **제3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대응 철저** **- 제1차 본회의 개회(11.8.), 행정사무감사(11.9.~11.20.)** **- 제2차 본회의 개회(11.21.), 상임위 예산안·조례안 등 의안심사(11.22.~11.27.), 예결위 예산안 심사(11.28.~12.12.)** **- 3차 본회의 폐회(12.13.)** - 11월 8일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므로 실·국장, 출연기관 본부장 및 기관장은 1주일 안으로 소관 상임위 의원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예상 쟁점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충분한 소통으로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관 : 전 실·국 / 협조 : 출연기관)

전주시 공고 제2022-2567호

전주 도시계획시설(평화2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님정 고시된'평화2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 주 시 장

1. 전주 도시계획시설(평화2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평화 2공원	어린이 공원	완산구 평화동1가 722-1번지	1,973.6	-	1,973.6	건설부고시 제131호 (1994.4.29.)	

2.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변경

가. 총괄조서 : 변경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개소)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전 체 면 적	1973.6	-	1973.6	-	-	-	-	-	-		기정시설률 44.68%
시 설 면 적 소 계	881.9	감)35.7	846.2	-	-	-	-	-	-		변경시설률 42.87%
도로 및 광장	675.4	감)210.4	465.0	-	-	-	-	-	-	-	
조경시설	0.0	-	0.0	-	-	-	-	-	-	1	포토존
휴양시설	0.0	-	0.0	-	-	-	-	-	-	6	휴양시설물
유희시설	196.7	증)32.7	229.4	-	-	-	-	-	-	5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시설	0.0	증)40.0	47.0	-	-	-	-	-	-	7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신설
교양시설	0.0	증)95.0	95.0	-	-	-	-	-	-	1	야외공연장
편익시설	9.8	-	9.8	-	-	-	-	-	-	1	세족장
관리시설	0.0	-	0.0	-	-	-	-	-	-	3	안내판
녹 지	1091.7	증)35.7	1127.4	-	-	-	-	-	-		녹지율 57.13%

나.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1973.6	-	1973.6	-	-	-	-	-	-		
시설부지면적					881.9	감)35.7	846.2	-	-	-	-	-	-		시설률 42.87%
도로 및 광장	소 계				675.4	감)35.7	465.0	-	-	-	-	-	-		
	도로 소계				56.5	감)0.3	56.2	-	-	-	-	-	-		
	-	-	도로	도로	56.5	감)0.3	56.2	-	-	-	-	-	-		
	광장 소 계				618.9	감)210.1	408.8	-	-	-	-	-	-		
	가	가	광장	광장	618.9	감)210.1	408.8	-	-	-	-	-	-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	-	1	
	A-1	A-1	포토존	포토존	-	-	-	-	-	-	-	-	-	1	신설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	-	6	
	B-1	B-1	파고라	파고라	-	-	-	-	-	-	-	-	-	1	재설치
	B-2	B-2	등의자	등의자	-	-	-	-	-	-	-	-	-	4	재설치
	-	B-3	-	원형의자	-	-	-	-	-	-	-	-	-	1	신설
	B-4	-	평의자	-	-	-	-	-	-	-	-	-	-	7	철거
유희 시설	소 계				196.7	증)32.7	229.4	-	-	-	-	-	-	5	
	나	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196.7	증)32.7	229.4	-	-	-	-	-	-		
	-	C-1	-	그물망 통과하기	-	-	-	-	-	-	-	-	-	1	신설
	-	C-2	-	통나무 건너기	-	-	-	-	-	-	-	-	-	1	신설
	-	C-3	-	어린이 쉘터	-	-	-	-	-	-	-	-	-	1	신설
	-	C-4	-	어린이 테이블	-	-	-	-	-	-	-	-	-	1	신설
	-	C-5	-	나무 오르기	-	-	-	-	-	-	-	-	-	1	신설
	C-6	-	조합 놀이대	-	-	-	-	-	-	-	-	-	-	1	철거
	C-7	-	시소	-	-	-	-	-	-	-	-	-	-	1	철거
운동 시설	소 계				-	증)47.0	47.0	-	-	-	-	-	-	7	
	다	다	운동공간	운동공간	-	증)47.0	47.0	-	-	-	-	-	-		
	C-1	C-1	야외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	-	-	-	-	-	-	-	-	7	재설치
교양 시설	소 계				-	증)95.0	95.0	-	-	-	-	-	-		
	-	라	-	야외 공연장	-	증)95.0	95.0	-	-	-	-	-	-	1	신설
편익 시설	소 계				9.8	-	9.8	-	-	-	-	-	-		
	마	마	세족장	세족장	9.8	-	9.8	-	-	-	-	-	-	1	존치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	-		
	G-1	G-1	안내판	안내판	-	-	-	-	-	-	-	-	-	3	이설
녹지	소 계				1091.7	증)35.7	1127.4	-	-	-	-	-	-		
	-	-	녹지	녹지	1091.7	증)35.7	1127.4	-	-	-	-	-	-		녹지율 57.13%

다. 도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총괄조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도로	기정	3	16.0	56.5	-	-	-	-	-	-	3	16.0	56.5
	변경	4	16.0	56.2	-	-	-	-	-	-	4	16.0	56.2

-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면적(㎡)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종 점	
	기정	계				-	16.0	56.5	-	-	
	변경					-	16.0	56.2	-	-	
1	기정	소로	3류	1	6.0	진입로	6.0	23.0	북측구역계	가-1	
2	기정	소로	3류	2	5.0	진입로	5.0	16.0	동측구역계	가-1	
3	기정	소로	3류	3	5.0	진입로	5.0	17.5	남측구역계	가-1	
	변경	소로	3류	3	5.0	진입로	5.0	17.2	남측구역계	가-1	

- 도로(변경) 결정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진입로 3-3	진입로 3-3	• 면적변경 - 면적 : 17.5㎡ ⇒ 17.2㎡	• 도로폭원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라. 시설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및 광장	소 계				675.4	감)210.4	465.0	-	-	-	-	-	-		
	도로 소계				65.5	감)0.3	56.2	-	-	-	-	-	-		
	-	-	도로	도로	65.5	감)0.3	56.2	-	-	-	-	-	-		
	광장 소계				618.9	감)210.1	408.8	-	-	-	-	-	-		
	가	가	광장	광장	618.9	감)210.1	408.8	-	-	-	-	-	-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	도로	• 면적감소 - 65.5㎡→56.2㎡	• 도로폭원 조정으로 인한 면적 증가
가	광장	• 면적감소 - 618.9㎡→408.8㎡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조경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조경시설	소 계				-	-	-	-	-	-	-	-	-	1	
	-	A-1	-	포토존	-	-	-	-	-	-	-	-	-	1	신설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A-1	포토존	• 신설	•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관 조형물 설치

• 휴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휴양시설	소 계				-	-	-	-	-	-	-	-	-		
	B-1	B-1	파고라	파고라	-	-	-	-	-	-	-	-	-	1	재설치
	B-2	B-2	등의자	등의자	-	-	-	-	-	-	-	-	-	4	재설치
	-	B-3	-	원형의자	-	-	-	-	-	-	-	-	-	1	신설
	B-4	-	평의자	-	-	-	-	-	-	-	-	-	-	8	철거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B-1	파고라	• 재설치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B-2	등의자	• 재설치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B-3	원형벤치	• 신설	• 나무그늘 아래 휴식공간으로 원형벤치 조성
B-4	평의자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 유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유희시설	소 계				196.7	증)32.7	229.4	-	-	-	-	-	-	5	
	나	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196.7	증)32.7	229.4	-	-	-	-	-	-	-	
	-	C-1	-	그물망 통과하기	-	-	-	-	-	-	-	-	-	1	신설
	-	C-2	-	통나무 건너기	-	-	-	-	-	-	-	-	-	1	신설
	-	C-3	-	어린이 쉘터	-	-	-	-	-	-	-	-	-	1	신설
	-	C-4	-	어린이 테이블	-	-	-	-	-	-	-	-	-	1	신설
	-	C-5	-	나무 오르기	-	-	-	-	-	-	-	-	-	1	신설
	C-6	-	조합 놀이대	-	-	-	-	-	-	-	-	-	-	1	철거
	C-7	-	시소	-	-	-	-	-	-	-	-	-	-	1	철거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나	어린이 놀이터	• 면적증가 - 196.7㎡→229.4㎡	• 놀이시설물 증가에 따른 놀이공간 면적 증가
C-1	그물망통과하기	• 신설	• 목재소재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조성
C-2	통나무건너기	• 신설	• 목재소재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조성
C-3	어린이쉘터	• 신설	• 어린이 휴식공간 조성
C-4	어린이테이블	• 신설	• 어린이 휴식공간 조성
C-5	나무오르기	• 신설	• 목재소재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조성
C-6	조합놀이대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C-7	시소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 운동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시설	소 계				-	증)47.0	47.0	-	-	-	-	-	-	7	
	-	다	-	운동공간	-	증)47.0	47.0	-	-	-	-	-	-		
	D-1	D-1	야외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	-	-	-	-	-	-	-	-	7	재설치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다	운동공간	• 면적증가 -A:0.0㎡→47.0㎡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운동공간 증가
D-1	야외운동기구	• 재설치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 교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양시설	소 계				-	-	-	-	-	-	-	-	-	1	
	-	라	-	야외공연장	-	-	-	-	-	-	-	-	-	1	신설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라	야외공연장	• 신설	• 주민 문화여가공간 조성

• 관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시설	소 계				-	-	-	-	-	-	-	-	-	3	
	G-1	G-1	안내판	안내판	-	-	-	-	-	-	-	-	-	3	이설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G-1	안내판	• 이설	•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안내판 위치 이동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시설	소 계				1091.7	증)35.7	1127.4	-	-	-	-	-	-	-	
	-	-	녹 지	녹 지	1091.7	증)35.7	1127.4	-	-	-	-	-	-	-	녹지율 57.13%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	녹 지	• 면적증가 - 1091.7㎡→1127.4㎡	• 시설부지면적 감소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3. 입안사유

○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 공원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4. 관계도면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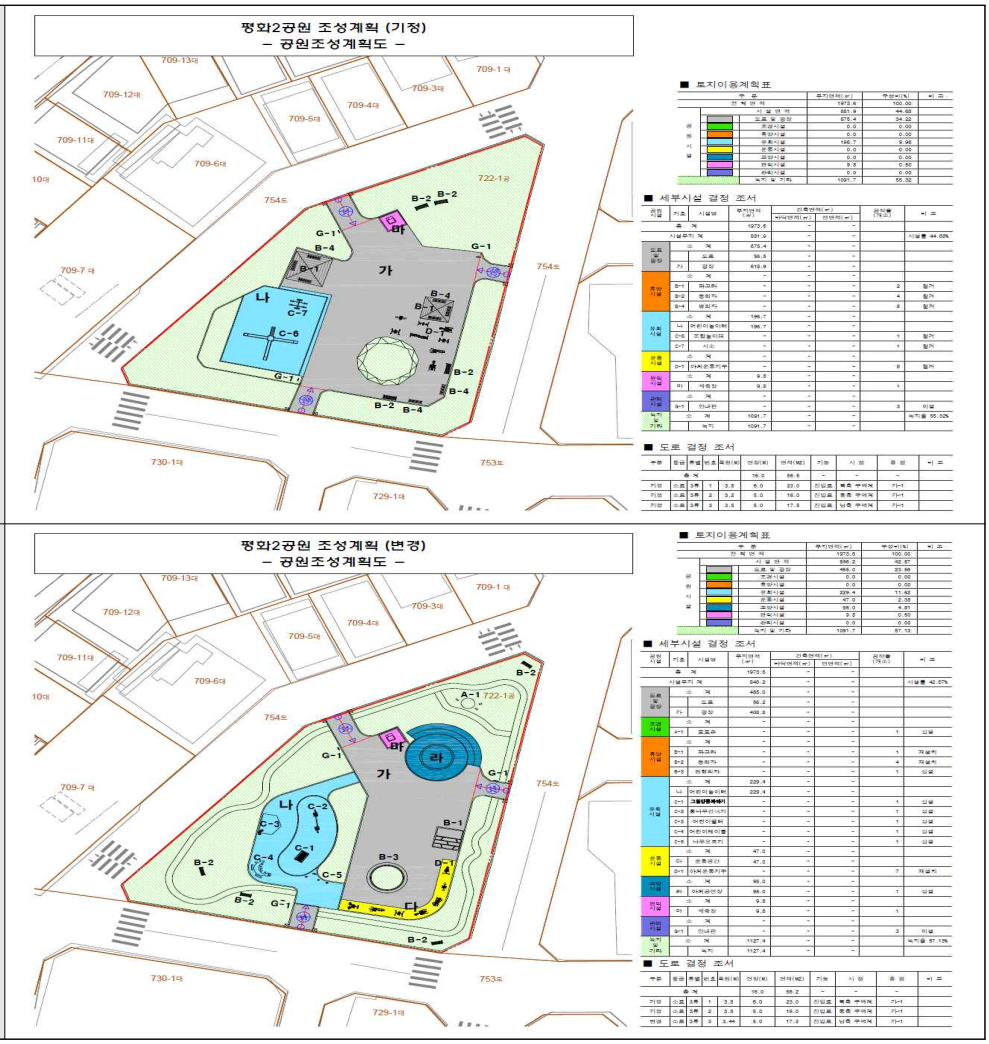

변경

5.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전주시 산림공원과(☎ 063-281-2437)

7. 의견제출 : 상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우편,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시 공고 제2022-2569호

전주 도시계획시설(한두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된'한두평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 주 시 장

1. 전주 도시계획시설(한두평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한두평공원	어린이공원	완산구 중화산동2가 662-5	1,471.0	-	1,471.0	건설부고시 제543호 (1988.11.07)	

2.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변경

가. 총괄조서 : 변경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개소)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전 체 면 적	1,471.0	0.0	1,471.0	33.0	증)17	50.0	33.0	증)17	50.0		기정시설률 :50.17%
시 설 면 적 소 계	738.0	감)62.0	676.0	33.0	증)17	50.0	33.0	증)17	50.0		변경시설률 :45.96%
도로 및 광장	327.0	증)89.0	416.0	-	-	-	-	-	-	-	
휴양시설	42.0	증)17.0	59.0	-	-	-	-	-	-	7	
유희시설	236.0	감)167.0	69.0	-	-	-	-	-	-	1	
운동시설	100.0	감)63.0	37.0	-	-	-	-	-	-	6	
편익시설	12.0	증)62.0	74.0	12.0	증)17	29.0	12.0	증)17	29.0	-	화장실 변경
관리시설	21.0	0.0	21.0	21.0	-	21.0	21.0	-	21.0	-	방범초소
녹 지	733.0	증)62.0	795.0	-	-	-	-	-	-		녹지율 54.04%

나.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1,471.0	-	1,471.0								
시설부지면적					738.0	감)62.0	676.0	33.0	증)17	50.0	33.0	증)17	50.0		시설율 45.96%
도로 및 광장	소 계				327.0	증)89.0	416.0	-	-	-	-	-	-		
	도로 소계				65.0	증)81.5	146.5	-	-	-	-	-	-		
	-	-	도로	도로	65.0	증)81.5	146.5	-	-	-	-	-	-		
	광장 소 계				262.0	증)7.5	269.5	-	-	-	-	-	-		
	가-1	가-1	광장A	광장A	29.2	증)0.8	30.0	-	-	-	-	-	-		
	가-2	가-2	광장B	광장B	89.4	증)15.6	105.0	-	-	-	-	-	-		
	가-3	가-3	광장C	광장C	77.5	증)57.0	134.5	-	-	-	-	-	-		
	가-4	-	광장D	-	65.9	감)65.9	0.0	-	-	-	-	-	-		
휴양 시설	소 계				42.0	증)17.0	59.0	-	-	-	-	-	-	7	
	나-1	나-1	휴게공간	휴게공간	42.0	증)17.0	59.0	-	-	-	-	-	-		
	A-1	A-1	파고라	파고라	-	-	-	-	-	-	-	-	-	1	재설치
	A-2	-	등의자	-	-	-	-	-	-	-	-	-	-	11	철거
	-	A-3	-	등의자	-	-	-	-	-	-	-	-	-	2	신설
	-	A-4	-	앉음벽	-	-	-	-	-	-	-	-	-	2	신설
	-	A-5	-	원형벤치	-	-	-	-	-	-	-	-	-	1	신설
	-	A-6	-	장식가벽	-	-	-	-	-	-	-	-	-	1	신설
유희 시설	소 계				236.0	감)167.0	69.0	-	-	-	-	-	-	1	
	다-1	다-1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236.0	감)167.0	69.0	-	-	-	-	-	-		
	B-1	-	조합 놀이대	-	-	-	-	-	-	-	-	-	-	1	철거
	B-2	-	시소	-	-	-	-	-	-	-	-	-	-	1	철거
	B-3	B-3	그네	그네	-	-	-	-	-	-	-	-	-	1	재설치
운동 시설	소 계				100.0	감)63.0	37.0	-	-	-	-	-	-	6	
	라-1	라-1	운동공간	운동공간	100.0	감)63.0	37.0	-	-	-	-	-	-		
	C-1	C-1	야외운동 기구A	야외운동 기구A	-	-	-	-	-	-	-	-	-	1	재설치
	C-2	C-2	야외운동 기구B	야외운동 기구B	-	-	-	-	-	-	-	-	-	1	재설치
	C-3	C-3	야외운동 기구C	야외운동 기구C	-	-	-	-	-	-	-	-	-	1	이설
	C-4	C-4	야외운동 기구D	야외운동 기구D	-	-	-	-	-	-	-	-	-	1	이설
	C-5	C-5	야외운동 기구E	야외운동 기구E	-	-	-	-	-	-	-	-	-	1	이설
	C-6	C-6	야외운동 기구F	야외운동 기구F	-	-	-	-	-	-	-	-	-	1	이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편익시설	소 계				12.0	증)62.0	74.0	12.0	증)17	29.0	12.0	증)17	29.0	-	
	마-1	마-1	화장실	화장실	12.0	증)62.0	74.0	12.0	증)17	29.0	12.0	증)17	29.0	1	재설치
관리시설	소 계				21.0	-	21.0	21.0	-	21.0	21.0	-	21.0	-	
	바-1	바-1	방범초소	방범초소	21.0	-	21.0	21.0	-	21.0	21.0	-	21.0	1	이설
녹지	소 계				733.0	증)62.0	795.0	-	-	-	-	-	-	-	녹지율 54.04%
	-	-	녹 지	녹 지	733.0	증)62.0	795.0	-	-	-	-	-	-	-	

다. 도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총괄조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도로	기정	2	24.0	65.0	-	-	-	-	-	-	2	24.0	65.0
	변경	4	57.3	146.5	-	-	-	-	-	-	4	57.3	146.5

-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면적(㎡)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종 점	
	기정	계				-	24.0	65.0	-	-	
	변경					-	57.3	146.5	-	-	
1	기정	소로	3류	1	3.0	진입로	14.0	42.0	서측 구역계	가-3	
	변경	소로	3류	1	4.0	진입로	15.0	60.0	서측 구역계	가-3	
2	기정	소로	3류	2	2.3	진입로	10.0	23.0	동측 구역계	가-4	
	변경	소로	3류	2	3.0	진입로	15.4	46.2	동측 구역계	가-3	
3	변경	소로	3류	3	1.5	산책로	9.0	13.5	가-3	나-1	
4	변경	소로	3류	4	1.5	산책로	17.9	26.8	가-2	나-1	

- 도로(변경) 결정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진입로 3-1	진입로 3-1	• 폭, 길이, 면적변경 - 폭 : 3.0m ⇒ 4.0m - 연장 : 14.0m ⇒ 15.0m - 면적 : 42.0㎡ ⇒ 60.0㎡	• 도로폭원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진입로 3-2	진입로 3-2	• 폭, 길이, 면적변경 - 폭 : 2.3m ⇒ 3.0m - 연장 : 10.0m ⇒ 15.4 m - 면적 : 23.0㎡ ⇒ 46.2㎡	• 도로폭원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산책로 3-3	• 산책로 신설	• 광장C에서 휴게공간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조성	
-	산책로 3-4	• 산책로 신설	• 광장B에서 휴게공간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조성	

라. 시설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및 광장	소 계				327.0	증)89.0	416.0	-	-	-	-	-	-		
	도로 소계				65.0	증)81.5	146.5	-	-	-	-	-	-		
	-	-	도로	도로	65.0	증)81.5	146.5	-	-	-	-	-	-		
	광장 소계				262.0	증)7.5	269.5	-	-	-	-	-	-		
	가-1	가-1	광장A	광장A	29.0	증)0.8	30.0	-	-	-	-	-	-		
	가-2	가-2	광장B	광장B	89.4	증)57.0	105.0	-	-	-	-	-	-		
	가-3	가-3	광장C	광장C	77.5	증)57.0	134.5	-	-	-	-	-	-		
	가-4	-	광장D	-	65.9	감)65.9	0.0	-	-	-	-	-	-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	도로	• 면적증가 - 65.0㎡→146.5㎡	• 도로폭원 조정으로 인한 면적 증가
가-1	광장A	• 면적증가 - 29.0㎡→30.0㎡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가-2	광장B	• 면적증가 - 89.0㎡→105.0㎡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가-3	광장C	• 면적증가 - 77.5㎡→134.5㎡	• 효율적인 공원 이용을 위한 면적 조정
가-4	광장D	• 광장C와 병합하여 공간삭제	• 공원 내 공간 병합에 따른 공간 삭제

• 휴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휴양시설	소 계				42.0	증)17.0	59.0	-	-	-	-	-	-	7	
	나-1	나-1	휴게공간	휴게공간	42.0	증)17.0	59.0	-	-	-	-	-	-		
	A-1	A-1	파고라	파고라	-	-	-	-	-	-	-	-	-	1	재설치
	A-2	-	등의자	-	-	-	-	-	-	-	-	-	-	11	철거
	-	A-3	-	등의자	-	-	-	-	-	-	-	-	-	2	신설
	-	A-4	-	앉음벽	-	-	-	-	-	-	-	-	-	2	신설
	-	A-5	-	원형벤치	-	-	-	-	-	-	-	-	-	1	신설
	-	A-6	-	장식가벽	-	-	-	-	-	-	-	-	-	1	신설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나-1	휴게공간	• 면적증가 - 42.0㎡→59.0㎡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A-1	파고라	• 재설치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A-2	등의자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A-3	등의자	• 신설	•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A-4	앉음벽	• 신설	•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A-5	원형벤치	• 신설	• 나무그늘 아래 휴식공간으로 원형벤치 조성
A-6	장식가벽	• 신설	• 녹음과 어우러지는 장식가벽 설치

• 유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유희시설	소 계				236.0	감)167.0	69.0	-	-	-	-	-	-	1	
	다-1	다-1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236.0	감)167.0	69.0	-	-	-	-	-	-		
	B-1	-	조합 놀이대	-	-	-	-	-	-	-	-	-	-	1	철거
	B-2	-	시소	-	-	-	-	-	-	-	-	-	-	1	철거
	B-3	B-3	그네	그네	-	-	-	-	-	-	-	-	-	1	재설치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다-1	어린이 놀이터	• 면적감소 - 236.0㎡→69.0㎡	• 놀이시설물 감축에 따른 놀이공간 면적 감소
B-1	조합놀이대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B-2	시소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B-3	그네	• 재설치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 운동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시설	소 계				100.0	감)63.0	37.0	-	-	-	-	-	-	6	
	라-1	라-1	운동공간	운동공간	100.0	감)63.0	37.0	-	-	-	-	-	-		
	C-1	C-1	야외 운동기구A	야외 운동기구A	-	-	-	-	-	-	-	-	-	1	재설치
	C-2	C-2	야외 운동기구B	야외 운동기구B	-	-	-	-	-	-	-	-	-	1	재설치
	C-3	C-3	야외 운동기구C	야외 운동기구C	-	-	-	-	-	-	-	-	-	1	이설
	C-4	C-4	야외 운동기구D	야외 운동기구D	-	-	-	-	-	-	-	-	-	1	이설
	C-5	C-5	야외 운동기구E	야외 운동기구E	-	-	-	-	-	-	-	-	-	1	이설
	C-6	C-6	야외 운동기구F	야외 운동기구F	-	-	-	-	-	-	-	-	-	1	이설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라-1	운동공간	• 면적감소 -A:100.0㎡→37.0㎡	•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C-1	야외운동기구A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C-2	야외운동기구B	• 철거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교체
C-3	야외운동기구C	• 이설	• 운동공간 조성에 따른 기존 야외운동기구 이설
C-4	야외운동기구D	• 이설	• 운동공간 조성에 따른 기존 야외운동기구 이설
C-5	야외운동기구E	• 이설	• 운동공간 조성에 따른 기존 야외운동기구 이설
C-6	야외운동기구F	• 이설	• 운동공간 조성에 따른 기존 야외운동기구 이설

• 편익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편익시설	소 계				12.0	증)62.0	74.0	12.0	증)17	29.0	12.0	증)17	29.0	1	
	마-1	마-1	화장실	화장실	12.0	증)62.0	74.0	12.0	증)17	29.0	12.0	증)17	29.0	1	재설치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마-1	화장실	• 부지면적 증가 - 12.0㎡→74.0㎡ • 건축면적 증가 - 12.0㎡→29.0㎡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교체 • 공원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

• 관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시설	소 계				21.0	-	21.0	21.0	-	21.0	21.0	-	21.0	1	
	바-1	바-1	방범초소	방범초소	21.0	-	21.0	21.0	-	21.0	21.0	-	21.0	1	이설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바-1	방범초소	• 이설	•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방범초소 위치 이동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소 계				733.0	증)62.0	795.0	-	-	-	-	-	-	-	
	-	-	녹 지	녹 지	733.0	증)62.0	795.0	-	-	-	-	-	-	-	녹지율 54.04%

- 변경결정 사유서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	녹 지	• 면적증가 - 733.0㎡→795.0㎡	• 시설부지면적 감소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3. 입안사유

: ○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 인근 밀집된 유흥가로 어린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
- 또한 남녀 미분리 화장실 정비 및 조성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 전면 보완

4. 관계도면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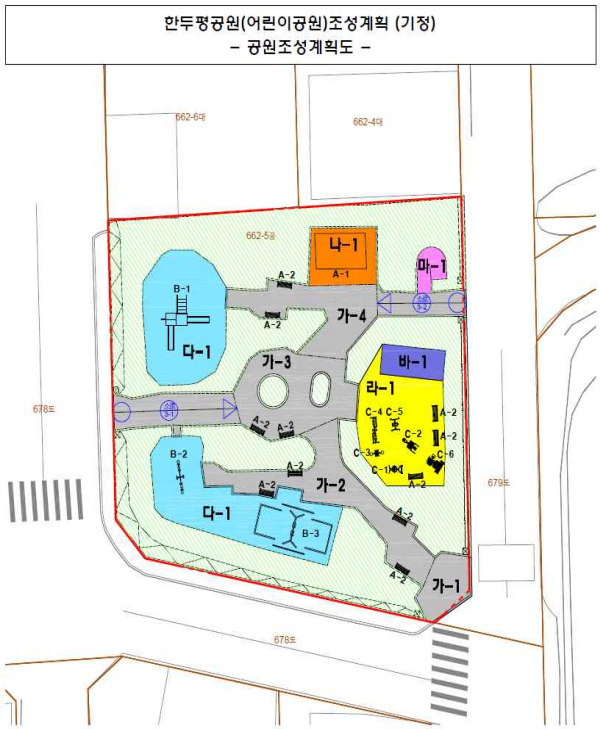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부성비(%)	비 고
전 체 면 적			1471.0	100.00	
공원시설	시 설 면 적		738.0	50.17	
	도로 및 광장		327.0	22.23	
	휴양시설		42.0	2.86	
	유희시설		236.0	16.04	
	운동시설		100.0	6.80	
	편익시설		12.0	0.81	
	관리시설		21.0	1.43	
녹지 및 기타			733.0	49.83	

■ 세부시설 결정 조서

공원시설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개소)	비 고
총 계			1471.0				
시설부지 계			738.0	33.0	33.0	21	시설률 50.17%
도로 및 광장	소 계		327.0	-	-		
	도로		66.0	-	-		
	가-1	광장A	39.2	-	-		
	가-2	광장B	89.4	-	-		
	가-3	광장C	77.5	-	-		
	가-4	광장D	55.9	-	-		
휴양시설	소 계		42.0	-	-		
	나-1	휴게공간	42.0	-	-		
	A-1	파고라	-	-	-	1	철거 및 교체
	A-2	등의자	-	-	-	11	철거
유희시설	소 계		236.0	-	-		
	다-1	어린이놀이터	236.0	-	-		
	B-1	조합놀이대	-	-	-	1	철거
	B-2	시소	-	-	-	1	철거
	B-3	그네	-	-	-	1	철거 및 교체
운동시설	소 계		100.0	-	-		
	마-1	운동공간	100.0	-	-		
	C-1	이레운동기구A	-	-	-	1	철거 및 교체
	C-2	이레운동기구B	-	-	-	1	철거 및 교체
	C-3	이레운동기구C	-	-	-	1	이설
	C-4	이레운동기구D	-	-	-	1	이설
	C-5	이레운동기구E	-	-	-	1	이설
	C-6	이레운동기구F	-	-	-	1	이설
편익시설	소 계		12.0	12.0	12.0		
	라-1	화장실	12.0	12.0	12.0	1	철거 및 교체
관리시설	소 계		21.0	21.0	21.0		
	바-1	방범초소	21.0	21.0	21.0	1	이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733.0	-	-		녹지율 49.83%
	-	녹지	733.0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종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시 점	종 점	비 고
총 계					24.0	65.0	-	-	-	
기정	소로	3류	1	3.0	14.0	42.0	진입로	서측 주택계	가-3	
기정	소로	3류	2	2.3	10.0	23.0	진입로	동측 주택계	가-4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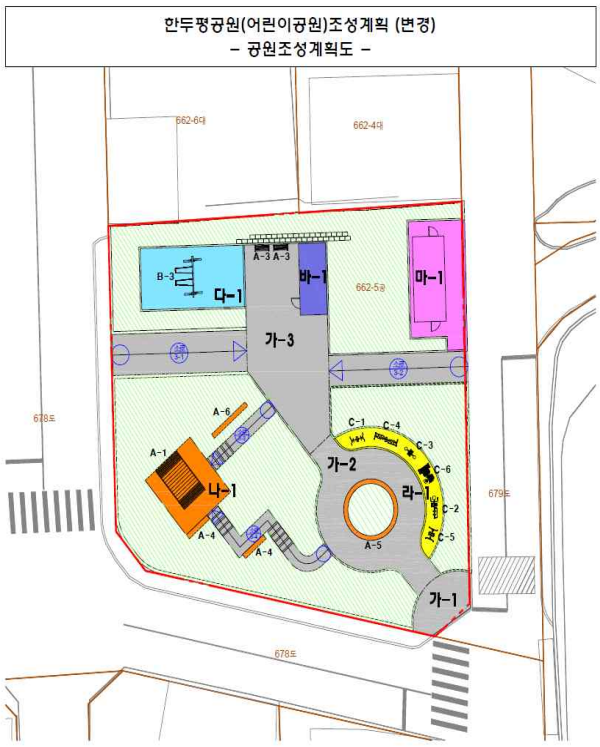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부성비(%)	비 고
전 체 면 적			1471.0	100.00	
공원시설	시 설 면 적		676.0	45.96	
	도로 및 광장		416.0	28.28	
	휴양시설		59.0	4.01	
	유희시설		69.0	4.69	
	운동시설		37.0	2.51	
	편익시설		74.0	5.03	
	관리시설		21.0	1.43	
녹지 및 기타			795.0	54.04	

■ 세부시설 결정 조서

공원시설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개소)	비 고
총 계			1471.0				
시설부지 계			676.0	60.0	60.0	14	시설률 50.17%
도로 및 광장	소 계		416.0	-	-		
	도로		146.5	-	-		
	가-1	광장A	30.0	-	-		
	가-2	광장B	105.0	-	-		
	가-3	광장C	134.5	-	-		
휴양시설	소 계		59.0	-	-		
	나-1	휴게공간	59.0	-	-		
	A-1	파고라	-	-	-	1	재설치
	A-2	등의자	-	-	-	2	신설
	A-3	강음벽	-	-	-	2	신설
	A-5	현황분지	-	-	-	1	신설
	A-6	장신기에	-	-	-	1	신설
유희시설	소 계		69.0	-	-		
	다-1	어린이놀이터	69.0	-	-		
	B-3	그네	-	-	-	1	재설치
운동시설	소 계		37.0	-	-		
	마-1	운동공간	37.0	-	-		
	C-1	이레운동기구A	-	-	-	1	재설치
	C-2	이레운동기구B	-	-	-	1	재설치
	C-3	이레운동기구C	-	-	-	1	이설
	C-4	이레운동기구D	-	-	-	1	이설
	C-5	이레운동기구E	-	-	-	1	이설
	C-6	이레운동기구F	-	-	-	1	이설
편익시설	소 계		74.0	29.0	29.0		
	라-1	화장실	74.0	29.0	29.0	1	재설치
관리시설	소 계		21.0	21.0	21.0		
	바-1	방범초소	21.0	21.0	21.0	1	이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795.0	-	-		녹지율 49.83%
	-	녹지	795.0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종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시 점	종 점	비 고
총 계					27.3	146.5	-	-	-	
변경	소로	3류	1	4.0	15.0	60.0	진입로	서측 주택계	가-3	
변경	소로	3류	2	3.0	10.4	46.2	진입로	동측 주택계	가-3	
변경	소로	3류	3	1.5	9.0	13.5	진입로	가-3	나-1	
변경	소로	3류	4	1.5	17.3	26.8	진입로	가-3	나-1	

5.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전주시 산림공원과(☎ 063-281-2437)

7. 의견제출 : 상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우편,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군산시 고시 제2022-18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2-49호(2022.4.8.)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가. 당초 : 대로 1-4 : B=3m, L=48m, A=97.2㎡(폭원확장구간 개설)
   중로 3-6 : B=3~6m, L=250m, A=1,167.7㎡(폭원확장구간 개설)
   소로 2-1120 : B=8m, L=60m, A=482.0㎡(노선 신설)
   나. 변경 : 대로 1-4 : B=3m, L=48m, A=97.2㎡(폭원확장구간 개설)
   중로 3-6 : B=3~6m, L=250m, A=1,163.1㎡(폭원확장구간 개설)
   소로 2-1120 : B=8m, L=60m, A=490.0㎡(노선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권곡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경남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당초 : 2022. 4. 8. ~ 2025. 6. 30.
   나. 변경 : 2022. 4. 8. ~ 2026. 5. 4.
6.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변경)

- 대로1-4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492.8	68.0	군산시					
2	조촌동	739-7	대	319.6	29.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계	2필지			812.4	97.2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167.0	68.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조촌동	739-7	대	29.2	29.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계	2필지			196.2	97.2						

- 중로3-6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492.8	99.0	군산시					
2	조촌동	739-2	대	177.9	68.5	군산시					
3	조촌동	739-3	대	226.6	87.2	군산시					
4	조촌동	739-4	대	196.9	75.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5	조촌동	739-5	대	239.9	97.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6	조촌동	739-6	수	10,904.1	28.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7	조촌동	739-53	잡	2,844.1	247.1	군산시					
8	조촌동	739-55	수	196.0	73.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9	조촌동	739-62	대	429.9	23.2	군산시					
10	조촌동	797	도	2,805.6	73.0	군산시					
11	조촌동	909	잡	2,636.3	294.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12	조촌동	963	도	1,500.9	1.0	군산시					
계	12필지			22,651.0	1,167.7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167.0	99.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조촌동	739-2	대	68.4	68.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조촌동	739-3	대	87.2	87.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조촌동	739-4	대	75.8	75.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조촌동	739-5	대	97.8	97.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조촌동	739-6	수	27.6	27.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조촌동	739-53	잡	247.2	247.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조촌동	739-55	수	99.3	7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조촌동	739-62	대	23.1	2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조촌동	797-1	도	73.3	73.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조촌동	909	잡	289.6	289.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조촌동	963	도	1,500.9	1.0	군산시					
계	12필지			2,757.2	1,163.1						

- 소로2-1120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122-2	대	273.0	69.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2	조촌동	122-3	대	30.0	27.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3	조촌동	122-5	대	111.0	22.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4	조촌동	122-6	대	144.0	95.0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5	조촌동	122-7	전	330.0	160.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6	조촌동	122-12	대	63.0	50.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7	조촌동	122-18	전	189.0	59.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계	7필지			1,140.0	482.0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122-24	대	71.0	71.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조촌동	122-25	대	27.0	27.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조촌동	122-26	대	12.0	12.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4	조촌동	122-27	대	10.0	10.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5	조촌동	122-28	대	92.0	92.0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6	조촌동	122-29	전	165.0	165.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조촌동	122-12	대	50.0	50.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조촌동	122-18	전	63.0	63.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계	8필지			490.0	490.0						

- 소로2-1120호선 (물건)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성명	주소	
1	조촌동	122-5	대	건물	콘크리트 (9.0m x 5.5m x 2.0m)	1채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건물	콘크리트 (9.5m x 5.5m x 3.0m)	1채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권곡동)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12m x 5.5m x 2.5m)	1채			
2		122-6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9.0m x 7.0m x 4.0m	1채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3		122-12	대	건물	샌드위치판넬+콘크리트 (12m x 6.5m x 4.0m)	1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4		122-2	대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3m x 10m x 10m)	1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계	4필지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성명	주소	
1	조촌동	122-26	대	건물	콘크리트 (9.0m x 5.5m x 2.0m)	1채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관련지번 (122-5)
				건물	콘크리트 (9.5m x 5.5m x 3.0m)	1채			
		122-27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12m x 5.5m x 2.5m)	1채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권곡동)	
2		122-28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9.0m x 7.0m x 4.0m	1채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관련지번 (122-6)
3		122-22	대	건물	샌드위치판넬+콘크리트 (12m x 6.5m x 4.0m)	1채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관련지번 (122-12)
4		122-24	대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3m x 10m x 10m)	1채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관련지번 (122-2)
계	5필지								

군산시 고시 제2022-190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미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군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군 산 시 장

Ⅰ.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6	미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미룡동 92번지 일원	24,826	감) 3	24,823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5	광로2-1북측	완충녹지	미룡동 188-2 일원	4,945	증) 3	4,948	2022.8.16.	

3)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5	광로2-1북측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4,945㎡ → 4,948㎡ (증 3㎡)	지적분할에 따른 확정면적으로 정정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4,826	감) 3	24,823	1-①	미룡동 92번지 일원	17,478	감) 6	17,472	공동주택용지
					1-②	미룡동 92-7번지 일원	2,403	-	2,403	도로용지
					1-③	미룡동 188-2번지 일원	4,945	증) 3	4,948	완충녹지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19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 1)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2-74호(2022.5.20.)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구암동 27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 1)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27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1)사업
   나. 명 칭 : 군산시 구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가. 당초 1) 대로 2-4 : L=145m, B=1.5~2.9m, A=277㎡
   2) 중로 1-4 : L=122.5m, B=3.3~5.2m, A=566㎡
   나. 변경 1) 대로 2-4 : L=145m, B=1.5~2.9m, A=284㎡
   2) 중로 1-4 : L=122.5m, B=3.3~5.2m, A=56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3층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 5. 20. ~ 2025. 7. 31.
6.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로2-4호선

당초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암동	271-7	도로	300	7	국토교통부				
2	구암동	272-3	공장	7,405	8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구암동	272-4	도로	104	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구암동	274-6	공장	1,233	4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구암동	274-7	공장	900	114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6	조촌동	633-5	도로	369	6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	군산시 소룡동 3-7			
7	조촌동	633-6	답	543	22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	군산시 소룡동 3-7			
합 계				10,854	277					

변경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암동	271-13	도로	8	8	국토교통부				
2	구암동	272-16	공장	245	245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구암동	272-19	도로	3	3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조촌동	633-13	답	22	22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조촌동	633-14	도로	6	6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합 계				284	284					

○ 중로1-4호선

당초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암동	262-8	도로	3,533	55	군산시				
2	구암동	263-4	답	4,945	10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구암동	267	답	380	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구암동	269-1	답	2,220	84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구암동	271-3	구거	3	1	오긍선	군산시 구암동 414			
6	구암동	271-4	답	5,774	21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7	구암동	272-2	구거	623	46	군산시				
8	구암동	272-8	답	40	16	군산시				
9	구암동	273-10	답	331	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0	구암동	273-15	답	104	1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1	구암동	606-2	구거	788	27	국토교통부				
합 계				18,741	566					

변경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암동	262-9	도로	54	54	군산시				
2	구암동	266-3	답	188	188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구암동	271-3	구거	1	1	오긍선	군산시 구암동 414			
4	구암동	271-11	답	212	212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구암동	272-2	구거	46	46	군산시				
6	구암동	272-18	답	16	16	군산시				
7	구암동	273-20	답	21	21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8	구암동	606-2	구거	27	27	국토교통부				
합 계				565	565					

군산시 공고 제2022 - 226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새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나운동,수송동,지곡동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70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2) 명 칭 : 새들허브숲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75,31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산림녹지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5.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수송동	702-8	임	1200	12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수송동	702-9	임	922	92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수송동	702-10	임	331	3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수송동	산24-2	임	4388	4388	국(산림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5	수송동	702-11	임	300	3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수송동	산23	임	500	5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수송동	708-10	임	1400	1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수송동	산34	임	1264	1,21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수송동	산22	임	89	8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수송동	702-1	임	4300	43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수송동	702-17	임	81	8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수송동	702-18	임	337	33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수송동	702-2	임	1431	14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4	수송동	708-7	임	1400	1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수송동	708-8	임	1000	10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6	수송동	998	임	1493	1493	군산시외2인	군산시 시청로 17				
17	수송동	1000	임	270	27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8	수송동	999	임	827	82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9	수송동	708-9	임	1400	1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0	수송동	산33	임	2001	200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1	수송동	708-2	임	3660	36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2	수송동	708-1	임	691	69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3	수송동	962	전	48	4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4	수송동	963	전	526	52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5	수송동	701-4	전	331	3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6	수송동	1004	전	369	3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순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7	수송동	1001	전	12	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8	수송동	1003	전	180	9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9	수송동	702-5	전	605	60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0	수송동	702-4	전	1960	19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1	수송동	966	전	1273	12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2	수송동	968	전	407	407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33	수송동	967	전	137	13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4	수송동	972	전	347	34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5	수송동	970	전	241	2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6	수송동	971	전	195	195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37	수송동	977	전	440	440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38	수송동	976	전	631	6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9	수송동	974	전	109	109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0	수송동	973	전	137	137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1	수송동	991	전	433	433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2	수송동	978	전	274	274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3	수송동	980	전	406	406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4	수송동	982	전	131	1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5	수송동	702	전	317	31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6	수송동	702-7	전	1091	109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7	수송동	702-6	전	1207	120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8	수송동	704-1	전	863	86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9	수송동	986	전	309	30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0	수송동	989	전	332	33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1	수송동	702-3	전	469	469	사유지 (황정현)	나포면 주곡리 184				
52	수송동	706	전	664	6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3	수송동	701-2	전	716	7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4	수송동	987	전	27	2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순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5	수송동	988	전	41	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6	수송동	701-3	전	49	4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7	수송동	993	전	1150	115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8	수송동	983	전	23	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9	수송동	985	전	225	22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0	수송동	984	전	101	10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1	수송동	990	전	754	75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2	수송동	992	전	985	98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3	수송동	981	전	11	11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64	수송동	994	전	264	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5	수송동	995	전	979	97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6	수송동	996	전	2431	24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7	수송동	997	전	257	25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8	수송동	707	전	939	93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9	수송동	969	묘	122	109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70	수송동	975	묘	245	243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71	수송동	979	묘	271	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2	수송동	961	공	4605.6	460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3	수송동	1005	도	156	138	국(농림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74	수송동	965	도	1208	888	국(농림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75	수송동	964	도	64	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6	수송동	788	공	1184.2	8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7	지곡동	산9	임	595	59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8	지곡동	286-5	임	5566	556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9	지곡동	273-10	임	16	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0	지곡동	273-9	임	16	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1	지곡동	273-13	임	7	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2	지곡동	286-7	임	4818	481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순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83	지곡동	273-1	전	605	60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4	지곡동	286-1	전	1283	128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5	지곡동	286	전	1202	77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6	지곡동	279	답	1987	54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7	지곡동	273-4	대	11	1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8	지곡동	273-3	대	96	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9	지곡동	273-2	대	55	5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0	나운동	126-10	전	1807	22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1	나운동	124-6	전	64	1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2	나운동	126-13	전	203	13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3	나운동	114-21	전	570	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4	나운동	114-23	전	1563	3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5	나운동	127-3	전	1437	33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6	나운동	114-17	도	463	35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7	나운동	126-5	도	360	126	국(농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익산시 고시 제2022-184호

여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지형도면고시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일원의 익산 도시관리계획(여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폐지)하고,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익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폐지)

1) 용도지구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 지	여산1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일원	-	31,941	익산시고시 제2000-40호 (2000.07.27.)	-

2) 폐지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여산1	개발진흥지구 (한라그린에너지)	• 개발진흥지구 폐지 • 면적 : 31,941㎡ → 0㎡ 감)31,941㎡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폐지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 지	여산1	한라그린에너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일 원	31,941	감)31,941	-	익산시고시 제2000-40호 (2000.07.27.)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 사유
여산1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일원	31,941㎡ → 0㎡ 감) 31,941㎡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이 화재로 가동 중단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금회 폐지하고 현재 용도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가) 공업용지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 지	여산1	1	27,780	감)27,780	-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일원	27,780	감)27,780	-	

나) 녹지용지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 지	여산1	2	3,961	감)3,961	-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3,961	감)3,961	-	

다) 공공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 지	여산1	3	200	감)200	-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200	감)200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 고
폐 지	여산1	1	용 도	지정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중분류: 33 /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2.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실음 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2-3066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10호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10호 외 2개소)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남중동 44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10호 외 1개소)사업
   ○ 사업의 명칭 : 남중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대로3류2호선 : L=168m, B=1.35m, 면적=17㎡
   ○ 대로3류10호선 : L=20m, B=1.5m, 면적=27㎡
   ○ 소로2류837호선 : L=168m, B=9~10m, 면적=1,6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제일건설 윤여웅
   ○ 주 소 : 익산시 익산대로 12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03.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33필지		12,078	1,698					
1	남중동	445-1	대	215	78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2	남중동	445-6	대	155	42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3	남중동	445-5	대	179	51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4	남중동	445-2	대	190	51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5	남중동	451-2	도	30	1	정해* 외6인	전라북도익산시팔봉동***기안파인골드빌 ***동***호			
6	남중동	453-1	전	195	20	정천*	***			
7	남중동	454-6	전	176	8	공(익산시)				
8	남중동	454-1	전	4169	26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9	남중동	458-1	대	86	5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10	남중동	458-43	대	238	66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11	남중동	519-87	도	1135	121	국(건설부)				
12	남중동	470-30	도	12	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13	남중동	470-2	대	195	7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14	남중동	470-31	도	2	2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15	남중동	470-18	대	160	9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16	남중동	470-19	대	2152	4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17	남중동	470-7	대	237	38	류미*	전주시완산구서신로102,***동****호 (서신동,광진선수촌아파트)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18	남중동	445-3	도	29	29	정천*	***			
19	남중동	445-4	도	53	53	정천*	***			
20	남중동	455-9	도	23	6	정국*	***			
21	남중동	455-73	도	11	11	익산시		한국주택은행		
22	남중동	455-74	도	9	9	익산시		한국주택은행		
23	남중동	519-86	도	1678	348	국(건설부)				
24	남중동	455-75	도	11	10	익산시				
25	남중동	453-2	도	10	9	정천*	417			
26	남중동	454-2	도	36	36	이범*	516			
27	남중동	455-10	도	79	70	정해*	서울서초구방배동***-*신동아아파트 *동****호			
28	남중동	454-3	도	17	17	이범*	익산시 남중동 ***			
29	남중동	458-13	도	20	20	이말*	익산시 창인동1가 **-*			
30	남중동	466-2	도	10	10	송인*	익산시 남중동 ***-*	김채*		
31	남중동	470-5	도	17	17	정도*				
32	남중동	469-5	도	31	31	송상*	무주군 무주면 읍내리 ***			
33	남중동	473-1	답	518	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34	남중동	457-2	도	3,346	17	익산시				

익산시 공고 제2022-3067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선 외 4개소)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외 4개소)사업
   ○ 사업의 명칭 : 함열읍 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소로2류2호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 L=74.6m, B=2m, 면적=687㎡	
소로1류8호		• L=94.3m, B=3m, 면적=186㎡	
소로1류814호		• L=126.3m, B=4m, 면적=511㎡	
소로2류3호		• L=97.8m, B=2m, 면적=239㎡	
소로1류815호		• L=125.3m, B=2~5m, 면적=45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2. 28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638-4	대	617	5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	638-9	대	41	24	익산시				
3	668-5	대	135	58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4	669-1	전	247	5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5	669-4	전	165	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6	670-4	답	239	7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7	674-2	전	149	7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8	686-2	전	570	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우리신용협동조합	익산시 인북로48길8-9	근저당
9	686-5	전	969	10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0	686-6	전	242	1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1	686-13	임	310	40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12	686-44	전	40	3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3	687-1	전	3,134	10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4	689-2	전	165	1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5	689-5	전	165	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6	689-8	전	49	17	익산시				
17	690	전	332	10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8	690-6	전	238	7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9	691	전	56	45	익산시				
20	1129-39	도	170	7	국토교통부				
21	1129-47	도	803	28	국토교통부				
22	163-5	도	3,572	58	익산시				
23	196-2	답	32	31	주식회사제일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2가 7-1			
24	196-3	유	9	9	익산시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5	196-4	답	3	3	익산시				
26	196-7	답	2,080	39	김진*	낭산면 용기리 *			
27	196-35	답	194	2	익산시				
28	196-36	답	198	29	박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길 *			59/198
					유승*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42번길 *			40/198
					이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			59/198
					진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			40/198
29	196-37	답	474	88	임영*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			144/474
					김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115/474
					한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86/474
					김홍*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14/474
					염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 *			43/474
					김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29/474
					고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			43/474
30	196-38	답	856	161	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 *			595/856
					이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			261/856
31	685-4	전	18	14	익산시				
32	686-32	전	251	17	구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두라2길 *			1/2
					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2길 *			1/2
33	635-1	답	731	6	익산시				
34	670-2	도	1,506	88	익산시				
35	670-17	답	118	118	익산시				
36	670-18	답	3	3	익산시				
37	670-19	답	42	42	익산시				
38	1129-58	도	46	46	국토교통부				
39	1129-60	도	17	17	국토교통부				
40	669	전	121	121	익산시				
41	689-7	전	136	136	익산시				

익산시 공고 제2022-3068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남중동 1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 남중동 북부시장 공영주차장(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주차장 : 475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12.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필지		4,785	4,755							
1	남중동	12-1	차	851	851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2	남중동	14-86	대	139	139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3	남중동	14-79	도	257	227		김용*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20-**				
4	남중동	14-14	차	2,054	2,054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5	남중동	14-15	대	172	172		이덕*	익산시 인북로11길16-*				
6	남중동	14-80	도	156	156		김용*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20-**				
7	남중동	14-34	차	1,156	1,156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NO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중동	14-15	주택	조적조/기와	59.14	㎡	이덕*	익산시 인북로11길16-*	
			창고	조적조/스레이트	2.38	㎡			
			주택	조적조/스레이트	15.98	㎡			
			가추	스레이트	9.38	㎡			
			가추	스레이트	10.88	㎡			
			화장실	조적조/슬래브	3.25	㎡			
			세면실	조적조/슬래브	3.96	㎡			
			계단	콘크리트	2	식			
			대문	철재/슬래브	1	식			
			현관	슬래브	3.84	㎡			
			바닥포장	콘크리트	25	㎡			
			담장	블록	8	m			
			화단		2	식			
			감나무		4	주			
			동백		3	주			
			석류		2	주			
			단풍		1	주			
			장미		1	주			
			수국		1	주			
			꽃사과		1	주			
			철쭉		7	주			
			기타 관상수		1	주			

익산시 공고 제2022-3069호

익산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원광대학교)사업
   ○ 사업의 명칭 : 원광대학교 병원 제2진입로 개선공사
2.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원광대학교 병원 제2진입로 개선공사 : 1,9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원광학원
   ○ 주 소 :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9,985	1,984							
1	익산시 신동	117	답	3,352	400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2	익산시 신동	117-3	답	2,646	19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3	익산시 신동	127	답	504	109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4	익산시 신동	128	답	3,200	1,290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5	익산시 신동	131-3	답	58	58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6	익산시 신동	131-5	전	11	11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7	익산시 신동	131-12	전	67	13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8	익산시 신동	720-44	답	139	76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학교법인원광학원					
9	익산시 신동	720-62	답	8	8		국(기획재정부)					

남원시 고시 제2022-152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인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시설 곡선형짚와이어 확충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시설 곡선형짚와이어 확충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63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전라북도교육감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359,508	632					
1	운봉	공안	산45	임	359,308	632	전라북도 (교육감)				

김제시 고시 제2022-1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 업 명 : 김제시 검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와이엠스테이

나. 대 표 자 : 박재홍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908호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31,162㎡

다. 건축면적 : 5,604.5849㎡ (건폐율 : 17.99%)

라. 연 면 적 : 76,891.2467㎡ (용적율 : 246.75%)

마. 규 모 : 648세대 (주11개동/지하 2층~지상 29층, 부7개동/지상2층)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민간분양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09월 15일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2	풍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	증) 31,355	31,355	금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결정사유
신설	12	풍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31,355	○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31,355	-	31,355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1	1	31,355	①	31,162	공동주택용지
			②	193	도로용지(기부채납)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①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지형도면고시도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

축 척 1 :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녹지

색 인 도

66	67	68
76	77	78
86	87	88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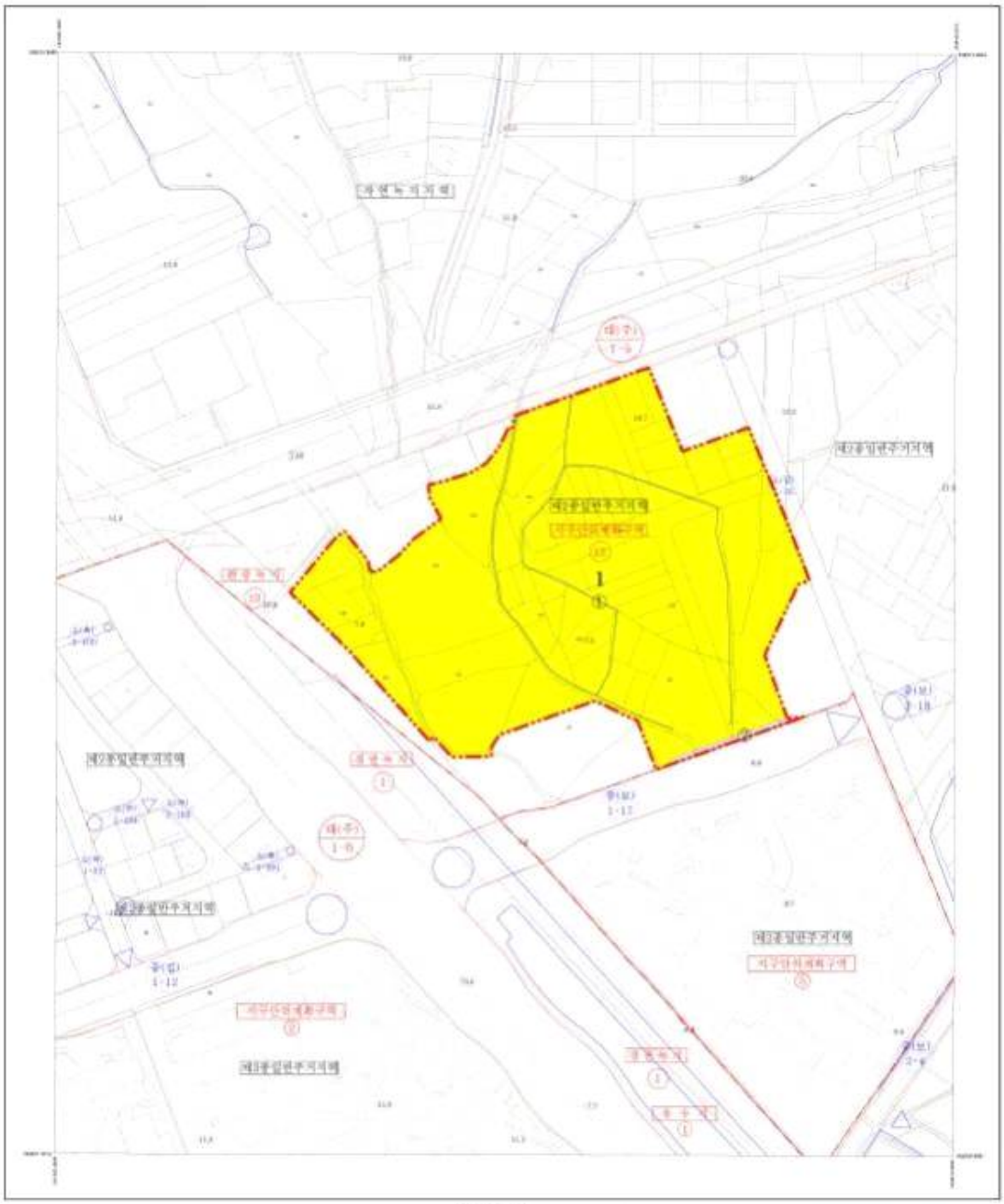

축 척 1 : 1,000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1 가구번호

가구 및 획지 경계선 ① 획지번호

색 인 도

556040 66	556040 67	556040 68
556040 76	556040 77	556040 78
556040 86	556040 87	556040 88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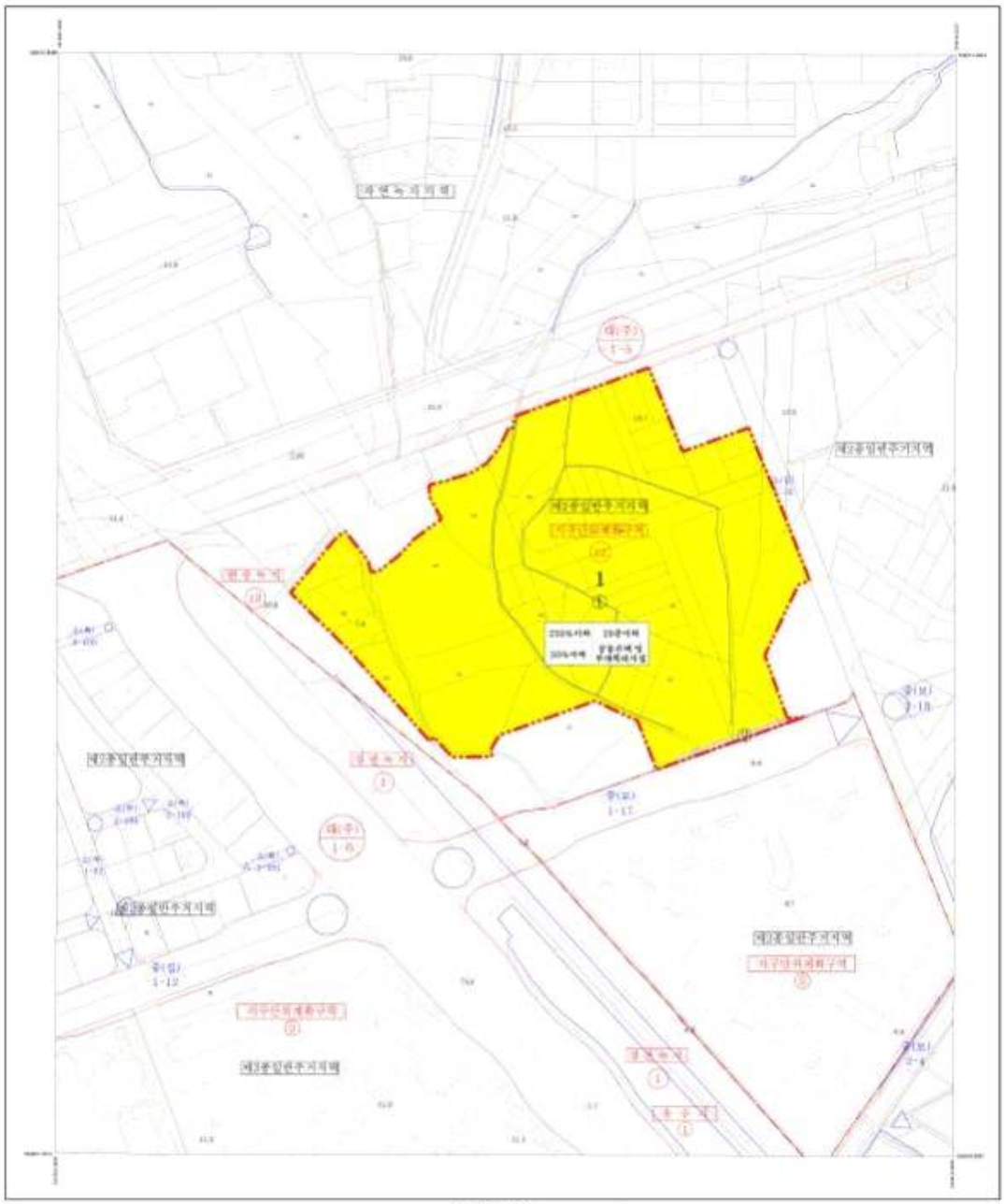

축 척 1 : 1,000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번호	용적률 최고높이
지구 및 획지 경계선	①	획지번호	건폐율 허용용도

색 인 도

66	67	68
76	77	78
86	87	88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
지 형 도 면 고 시 도

축 척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녹지

- 지 정 권 자 : 김 제 시 장
- 고 시 년 도 : 2022년 11월 일
- 고 시 번 호 : 김제시 고시 제2022 - 호
- 작 성 자 : 김제시 도시계획담당자
- 작 성 년 월 일 : 2022년 11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김 제 시 장

색 인 도

66	67	68
76	77	78
86	87	88

완주군 공고 제2022-1608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군 고시 제2021-103(2021.10.0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707-13번지 외 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 명 칭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수과퇴비사)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721,748.4㎡
     (대지면적 : A블럭: 352,374.9㎡, B블럭: 169,764.74㎡, C블럭: 28,903.6㎡)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증축	변경	기정	증축	변경	
합계		**59,924.71**	**320.00**	**60,244.71**	**80,710.01**	**320.00**	**81,030.01**	
A블럭	소계	48,616.00	-	48,616.00	68,323.69	-	68,323.69	
	주1,부1~41	48,616.00	-	48,616.00	68,323.69	-	68,323.69	
B블럭	소계	11,171.19	-	11,171.19	12,250.32	-	12,250.32	
	주1,부1~22	11,171.19	-	11,171.19	12,250.32	-	12,250.32	
C블럭	소계	137.52	320.00	457.52	136.00	320.00	456.00	
	주1	137.52	-	137.52	136.00	-	136.00	
	부1	-	**320.00**	**320.00**	-	**320.00**	**32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2. 06. ~ 2022. 10.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2-1609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 공고

완주군 화산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에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11월 11일

Ⅰ.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 분할시행사업면적)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47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나. 명 칭 : 화산승마체험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분할시행사업면적)
   가. 체육시설(당초) : A=66,500㎡
      · 1차분 : 34,840㎡[조성 완료(도로 : 소로1-6호선 포함)]
      · 2차분 : 22,560㎡[(도로 : 소로2-7호선 포함)]
      · 3차분 : 9,100㎡[주차장]
   나. 도로(소로 2-7호선, 당초) : L=164m, B=8m(변경없음)
   다. 체육시설(변경) : A=66,500㎡
      · 1차분 : 34,840㎡[조성 완료(도로 : 소로1-6호선 포함), 변경없음]
      · 2차분 : 29,500㎡[(도로 : 소로2-7호선 포함)]
      · 3차분 : 2,160㎡[주차장]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완주군수(농업축산과)
   나.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1 차 분 : 조성완료
   나. 2 차 분 : 2021 .07. 16. ~ 2022. 12. 31.
   나. 3 차 분 : 2021 .07. 16.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7. 열람(의견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의견제출)장소 :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 농업축산과(063-290-3242), 화산면행정복지센터(063-290-3714)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 소	소유자외 권리권자
1	화산면 화월리	490	잡	107	107	완주군	-	-
2	화산면 화월리	491	창	1,572	1570	완주군	-	
3	화산면 화월리	491-2	답	760	615	신원식	화월리 466	
4	화산면 화월리	491-6	도	43	3	오정낭	전주부 완산정 43	변경전 : 491-1 변경전면적 : 7 ㎡
5	화산면 화월리	495	답	914	914	완주군	-	-
6	화산면 화월리	491-4	창	2	2	완주군	-	-
7	화산면 화월리	497-1	목	363	153	완주군	-	-
8	화산면 화월리	497-6	답	494	442	완주군	-	-
9	화산면 화월리	497-9	목	1,426	1,274	완주군	-	-
10	화산면 화월리	501-1	도	48	6	완주군	-	-
11	화산면 화월리	502-1	도	216	112	완주군	-	-
12	화산면 화월리	503	도	129	90	완주군	-	-
13	화산면 화월리	504-1	답	2,914	2,914	완주군	-	-
14	화산면 화월리	504-3	도	823	772	완주군	-	-
15	화산면 화월리	505-1	답	2,302	2,302	완주군	-	-
16	화산면 화월리	505-3	도	20	20	강준석	화월리 464-2	채권자 화산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7	화산면 화월리	903-9	도	75	75	국(건설부)	-	-
18	화산면 화월리	903-10	도	268	268	국(건설부)	-	-
19	화산면 화월리	903-11	도	159	159	국(건설부)	-	-
20	화산면 화월리	505-4	도	13	13	완주군	-	-
21	화산면 화월리	505-5	도	91	91	완주군	-	-
22	화산면 화월리	505-6	도	61	61	완주군	-	-
23	화산면 화월리	506-4	도	26	22	장원균	화월리 466	-
24	화산면	506-5	도	78	78	완주군	-	-

연번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 소	소유자의 권리권자
	화월리							
25	화산면 화월리	514-1	답	1,061	1,061	완주군	-	-
26	화산면 화월리	608-2	대	419	419	완주군	-	-
27	화산면 화월리	608-3	답	581	581	완주군	-	-
28	화산면 화월리	608-6	답	1,374	1,374	완주군	-	-
29	화산면 화월리	608-9	대	78	78	완주군	-	-
30	화산면 화월리	608-10	대	72	72	완주군	-	-
31	화산면 화월리	608-11	답	245	245	완주군	-	-
32	화산면 화월리	608-14	대	231	231	완주군	-	-
33	화산면 화월리	608-15	대	571	571	완주군	-	-
34	화산면 화월리	610-3	답	258	19	남조웅	화월리608	-
35	화산면 화월리	610-5	답	910	910	완주군	-	-
36	화산면 화월리	612-1	답	1,278	1,278	완주군	-	-
37	화산면 화월리	612-2	답	1,239	1,239	완주군	-	-
38	화산면 화월리	612-3	답	1,223	1,144	완주군	-	-
39	화산면 화월리	612-4	답	760	760	완주군	-	-
40	화산면 화월리	612-5	도	73	28	유기홍	화월리 611	-
41	화산면 화월리	612-6	답	1,505	1,505	완주군	-	-
42	화산면 화월리	612-7	답	793	793	완주군	-	-
43	화산면 화월리	613	답	2,483	2,483	완주군	-	-
44	화산면 화월리	614	답	1,029	1,029	완주군	-	-
45	화산면 화월리	614-2	답	9	9	완주군	-	-
46	화산면 화월리	616-3	잡	1,441	1,441	완주군	-	-
47	화산면 화월리	903-8	도	200	167	국(건설부)	-	-
합 계				30,737	29,500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11.
익 산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2022. 11. 11. ~ 2022. 11. 28.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1) 위 반 자: (유)대*산업개발
2) 법인번호: 210114-01*****
3)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
4) 위반사항: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

나. 납부금액: 금2,060,000원(금이백육만원) 본세 : 2,000,000 + 가산금 : 60,000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2월 9일

라. 납부방법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보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바.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11.
익 산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2022. 11. 11. ~ 2022. 11. 28.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1) 위 반 자 : 이*일
2) 주민등록번호 : 641203-1******
3)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
4) 위반사항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

나. 납부금액: 금2,060,000원(금이백육만원) 본세 : 2,000,000 + 가산금 : 60,000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2월 12일

라. 납부방법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보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바.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5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11.
익 산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2022. 11. 11. ~ 2022. 11. 28.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1) 위 반 자: 황*일
2) 주민등록번호: 650720-1******
3)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
4) 위반사항: 제조소등 설치자의 용도폐지 신고 위반

나. 납부금액: 금2,060,000원(금이백육만원) 본세 : 2,000,000 + 가산금 : 60,000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2월 12일

라. 납부방법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화 후 납부가 완료됨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바.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2-1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려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 안 소 방 서 장
2022년 11월 11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승헌(생년월일 : 831204-1******)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3길 20 보석빌라 202호(인후동1가)
2. 위반내용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함.
3. 위반법규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2,468,000원(금이백사십육만팔천원)
5. 부과연월일 : 2022. 11. 08.
6. 납부기한 : 2022. 12. 07.
7. 납부방법 : 부안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23139)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80-1243)